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경상북도에서는 '93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조성하기로 협의하였음.
-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8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개요
 - (1) 기 금 명 : 20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2) 주관기관 : 경상북도

(3) 조성근거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출연금액 : 금228,000천원

(5) 조성목표 : ('93~'17년)2,000억원 → ('22년까지) 2,500억원 이상

(6) 조성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연장)

(7) 재 원 : 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이자

※ 출연근거 :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또는 농·수협 등

(2) 지원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물개발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3)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한도액
 - 개인 : 2억원 이하, 법인 : 5억원 이하
 - 기타(가공산업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지원형태 : 융자지원 100%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4) 사업추진절차

- '17. 8월 : 사업지원계획 시달(도)
- '17. 8~9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
- '17.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18. 1~12월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확인 신청(사업자 ⇒ 시)
- '18. 1~12월 : 사업완료확인서 발급(시)
- '18. 1~12월 : 융자실행(금융기관)

○ 출연현황 및 지원실적

(1) 구미시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93~'17년 출연실적	'17년 출연액	'18년 출연계획	비고
구미시	5,340	284	228	

(2) 경상북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6년까지	'17년	'18년
재 원 별	계	216,888.7	198,788.7	9,100	9,000
	도	50,893.4	45,893.4	2,500	2,500
	시·군	89,700.0	80,700.0	4,500	4,500
	농·수협등	18,970.3	16,970.3	1,000	1,000
	운영수익	57,325.0	55,225.0	1,100	1,000

(3) 연도별 지원실적(구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6-'10	'11	'12	'13	'14	'15	'16	'17
농가수(호)	230	140	8	8	29	9	7	12	17
융자금액	22,418	12,981	865	742	1,651	1,390	795	1,980	2,014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의 충격완화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조성하여 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에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에 따른 출연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식품 수출, 귀농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